

청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3가단159622 전부금
원 고 ○○○
피 고 ♣♣♣ 주식회사
변 론 종 결 2015. 3. 27.
판 결 선 고 2015. 4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5,260,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8. 3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○○○○공사의 ~~주식회사~~ 주식회사에 대한 가압류

○○○○공사는 ○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○○○○'이라 한다)에 대한 미납 전기요금 110,521,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, 2012. 2. 8. 110,117,24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○○○○ 소유의 충북 ~~~ 지상 공장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가압류(이하 '이 사건 가압류'라 한다)하였다.

나. 피고와 ○○○○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

피고는 2012. 8. 30. ○○○○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6억 8,060만 원 (계약금 4억 6,460만 원, 잔금 12억 1,600만 원)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 한다)하였는데,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한 가압류(15건) 채무에는 이 사건 가압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.

[합의 특약 사항]

- 4항) 잔금 지급은 상수도세 및 2012. 6. 26. 현재 (이 사건 건물에 관한)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(15건), 압류(청원군 압류 제외) 채무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되, 가압류 말소가 불가능한 사항은 공탁하여 말소하며,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액 2,000만 원은 ○○○○ 기숙사 보증금(채권) 중에서 계약과 동시에 양도해주기로 한다.
- 5항) 소유권이전은 계약금 4억 6,460만 원이 지급됨과 동시에 매수자(피고)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다.

다. ○○○○공사의 이 사건 가압류 해제

한편, ○○○○공사는 2012. 8. 30. 피고와 피고가 ○○○○의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110,521,940원 중 50%인 55,260,970원을 2012. 8. 31.까지 납부하면 ○○○○공사는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기로 약정하였고,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55,260,97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주었다.

라. ○○○○의 피고에 대한 이행최고와 매매계약 일부 취소통지

○○○○은 2013. 8. 5. 피고에게 "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중 미변제 채무금 55,260,970원을 ○○○○에게 지급하라"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, 2013. 9. 11. 다시 피고에게 "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부분을 취소하니, 위 미변제 채무금 55,260,970원을 ○○○○에게 지급하라"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,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.

마.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

1) 한편, ○○○○은 2013. 12. 4. 원고에게 액면금액 500,000,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(공증인가 법무법인 △△ 작성 증서 2013년 제403호)를 작성하였다.

2)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. 12. 16.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10306호로 '○○○○과 피고 사이의 2012. 8. 30.자 부동산매매계약(이 사건 건물 및 건물에 따른 부대시설 및 기계)에 따른 매매대금청구권 중 청구금액 1억 원에 이르는 부분'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(이하 '이 사건 전부명령'이라고 한다)을 받았고, 위 전부명령은 2013. 12. 19.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,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바. 관련 소송의 결과

한편, ○○○○공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채무를 인수하였음에도 그 중 55,260,97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미변제 채무금인 55,260,97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(청주지방법원 2014

가단156187호)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4. 11. 5. ○○○○공사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, 13 내지 16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

1)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의무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중 55,260,97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피고는 ○○○○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 의무의 이행으로써 위 55,260,9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

그런데, 원고는 ○○○○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위 잔금지급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,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,260,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판단

살피건대,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잔금지급 의무에 갈음하여 ○○○○의 ○○○○공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,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중 55,260,970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러나,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○○○○의 ○○○○공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므로,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곧바로 ○○○○이 피

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중 미변제 채무금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잔금 명목으로 지급을 구할 어떠한 계약상 권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.

나아가 피고와 ○○○○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미변제 채무금을 ○○○○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○○○○이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대신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따라서 ○○○○의 피고에 대한 위 미변제 채무금 상당의 잔금지급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

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○○○○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, ○○○○의 채권자로서 ○○○○을 대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을 해제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잔금 55,260,97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,260,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판단

○○○○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중 미변제 부분에 관하여 ○○○○에게 변제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고, 피고가 위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, 피고에게 '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부분'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

그러나, ○○○○의 위 취소통지를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본래

계약은 전체로서 성립하여 그 전체가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 민법도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전부해제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바,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일부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호재